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68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이성윤 · 김 윤 · 박균택
김준혁 · 최기상 · 조계원
손명수 · 복기왕 · 서삼석
양부남 · 윤준병 · 서미화
윤종균 · 차규근 · 조정식
김 현 의원(16인)

제안이유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간병 등 재정적·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 1. 7.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

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8조제 2항).

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의 사유를 완화하여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함(안 제492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8조제2항 중 “追徵”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으로 한다.

제4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92條(노역장유치의 집행과 정지의 특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471조제1항제1호 및 제471조의2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448條(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① (생 략)</p> <p>②前項의 境遇에는 <u>追徵</u> 其他 附隨의 處分을 할 수 있다.</p> <p>第492條(勞役場留置의 執行) 罰 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 에는 刑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p>	<p>第448條(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① (현행과 같음)</p> <p>②-----<u>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u>-----.</p> <p>第492條(노역장유치의 집행과 정 지의 특례) 벌금 또는 과료를 完納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 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만, 벌금 또는 과료를 完納하 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 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 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 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471조제 1항제1호 및 제471조의2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 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정 지할 수 있다.</p>